

2018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추경예산개요

1. 세 입

- 평생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232억 9천 4백만원으로 당초보다 35억 2천만원(17.8%)이 증가된 수준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규모 〉

(단위:백만원)

구분		2018년도			증감률
		기정 예산	추경 예산	증감	
합계		19,774	23,294	3,520	17.8%
세외 수입	경상적세외수입	14,164	17,684	3,520	24.9%
	임시적세외수입	5,610	5,610	-	-

〈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

(단위:백만원)

세 목	구 분	예 산 액			
		기정 예산	추경 예산	증감	증감율
총 계		19,774	23,294	3,520	17.8
세외수입		5,874	5,874	-	-
	경상적세외수입	264	264	-	-
	임시적세외수입	5,611	5,610	-	-

세 목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증감율
사업수입		-	2,900	2,900	순증
	기타사업수입	-	2,900	2,900	순증
지방교부세		50	-	-	-
	지방교부세	50	-	-	-
보조금		13,818	14,438	620	4.5
	국고보조금등	13,818	14,438	620	4.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2	-	-	
	보전수입등	32	-	-	

2. 세출예산

- 평생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3조 7,295억 9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 3,296억원 대비 12.0%(3,999억9천4백만원)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증감율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총 계	3,329,600	3,729,594	399,994	12.0%	
행정관리	행정운영경비	337	337	-	
	재무활동	55	89	34	61.8%
	사업비	3,329,208	3,729,168	399,960	12.0%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 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18 예산		2018예산 (추경예산 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7.30 현재)		증감	비율
합 계	3,000,175	3,000,175	3,400,169	399,994	13.3%
지방세전출	1,230,170	1,230,170	1,442,112	211,941	17.2%
담배소비세 전출	280,972	280,972	281,189	216	0.1%
지방교육세 전출	1,458,184	1,458,184	1,647,280	189,097	13.0%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2,129	2,129	2,230	101	4.8%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운영)	3,067	3,067	3,107	40	1.3%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7,090	7,090	7,407	317	4.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3,084	3,084	3,258	174	5.6%
반환금 및 기타	55	55	89	34	61.8%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450	450	-	△450	△100%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14,974	14,974	12,474	△2,500	△16.7%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	-	1,024	1,024	순증

Ⅱ . 검토의견

1. 세입예산

-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32억 9천 4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5억 2천만원(17.8%)이 증가된 수준으로 ‘기타사업수입’ 29억원, ‘국고보조금등’ 6억2천만원을 증액 제출하고 있음.

〈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내역 〉

(단위:백만원)

	예 산 액				비 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 감	증 감 율	
총 계	19,774	23,294	3,520	17.8	
세 외 수입	5,874	5,874	-	-	
경상적세외수입	264	264	-	-	
임시적세외수입	5,611	5,610	-	-	
사업수입	-	2,900	2,900	순증	
기타사업수입	-	2,900	2,900	순증	○ 친환경유통센터 사용료 징수 2,900
지방교부세	50	-	-	-	
지방교부세	50	-	-	-	
보조금	13,818	14,438	620	4.5	
국고보조금등	13,818	14,438	620	4.5	○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307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78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51 ○ 가출청소년 보호 지원 164 ○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운영) 2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2	-	-		
보 전 수입 등	32	-	-		

가. 기타사업수입

- ‘기타사업수입’은 친환경유통센터 사용료로 당초 세입에 미편성되었으나,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 공급 및 배송체계 구축·운영, 공급·배송 업체의 선정·평가·관리, 식재료의 안정성·품질관리 등의 업무 위탁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임.
- 친환경유통센터는 물류시설 제공, 안전성 검사, 검품·검수, 수발주 시스템 운영, 산지 및 가격 관리 등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용료를 공급 및 납품 업체에 부과하고 있음.
- ※ 친환경유통센터 사용료는 센터에서 선정한 공급 및 납품업체에게 식재료 관리비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음.
 - 농산물(양곡, 농산가공 포함) : 공급업체(생산자단체)
 - 축산물과 수산물 : 납품업체(배송업체, 납품업체가 가공과 배송을 동시수행)
- 친환경유통센터 사용료는 6월말까지 15억1천1백만원이 부과되었고, 7월말 현재 11억9천3백만원을 징수하였음. 2018년 총 부과 예상액을 29억3천5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29억원으로 3천5백만원 적게 편성 제출하고 있음.

〈 2018년 친환경유통센터 사용료 총 부과예상액 〉

(단위:백만원)

합 계	농산물(양곡포함)	농산가공상품	축산물	수산물
2,935	1,673	263	739	260

- 이는 부과와 징수의 시차를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사용료는 부과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매월 정기적인 세입에 해당하느바, 「지방재정법」¹⁾제34조 제1항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총 부과 예상액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당 회계연도에 징수되지 않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차년도 지난연도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바, 평생교육국이 편성한 세입의 규모가 적정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나. 국고보조금등(국고보조금, 기금)

- ‘국고보조금등’은 국고보조금은 3억 7백만원, 기금은 3억1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추경예산안 세입의 세목별 증감내역 〉

(단위:백만원)

	예 산 액			비 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국고보조금등	13,818	14,438	620	
국고보조금	1,212	1,519	307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307
기금	8,456	8,769	3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78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51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164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운영) 20

- ‘국고보조금’은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이며, 본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국가 3, 서울시7)으로, 총사업비 10억 2천 4백만원 중 국가 부담분 3억7백만원이 교부된 것임.

1) 「지방재정법」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은 제철과일 소비확대를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에게 150g 내외의 조각과일을 주1~2회 제공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을 계획·추진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시의 2018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된 후 금년 1월에 시범사업 추진계획²⁾을 서울시에 통보하였는바, 평생교육국은 건의 등을 통하여 시행예정사업에 대해 본 예산 편성 전 계획 및 추진일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관련 공문수발신 내역 발췌 〉

일 자 (문서번호)	제목(수신, 발신, 붙임자료 등 내역 포함)
'18. 1. 2. 원예경영과-7	학교 과일간식 지원방안 및 2018년 시범사업 추진계획 통보(수신) - 붙임자료: 학교 과일간식 지원방안 및 2018년 시범사업 추진계획
'18. 1.16. 원예경영과-237	2018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안) 의견수렴(수신) - 붙임자료: '18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안)
'18. 1.25. 원예경영과-431	2018년도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사업비 변경 통보(수신) - 붙임자료:2018년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비 확정내역 1부
'18. 2. 6. 원예경영과-616	'18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설명회 알림(수신)
'18. 2. 21. 원예경영과-850	2018년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보완 통보(수신) - 붙임자료: 2018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18. 3.22. 원예경영과-1351	2018년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관련 회의 개최 및 사업비 신청 안내(수신) - 붙임자료: '18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2) 농림축산식품부, 2017.12.28. ‘학교 과일간식 지원방안 및 2018년 시범사업 추진계획’

2. 세출예산

- 평생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법정전출금(3건, 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9개 사업에 4,029억6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30억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가. 법정전출금(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전출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017년도 시세 정산분(결산차액)을 반영하여 지방세 전출금(2,119억9천4백만원)과 담배소비세 전출금(216억원), 지방교육세 전출금(1,890억9천7백만원) 등 총 4,012억5천4백만원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등, 이하 ‘법정전출금’)은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련 법령³⁾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 포함)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청에 지원하여 서울시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 2018년 제1차 추경 중 법정전출금 현황 〉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별	2018 예산		2018예산 (추경예산 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7.30 현재)		증감	비율
합 계	2,969,326	2,969,326	3,370,581	401,254	13.5%
지방세 전출	1,230,170	1,230,170	1,442,112	211,941	17.2%
담배소비세 전출	280,972	280,972	281,189	216	0.1%
지방교육세 전출	1,458,184	1,458,184	1,647,280	189,097	13.0%

○ 법정전출금은 법령⁴⁾과 조례⁵⁾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90%이상 전출하고 반기별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차년도 예산 또는 차년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2017회계연도 전출금 차액을 금번에 정산하려는 것임.

-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드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자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자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 5)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제3조(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하며, 반기별로는 징수된 세액을 정산하여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재정상황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합의를 거쳐 반기별 정산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 할 수 있다.

〈 2017회계연도 법정전출금 대상의 징수현황 〉

(단위:백만원)

세목	2017년		지난년도 시세	장수액합계 (a+b)	법정전출금 대상여부	적용 비율	법정전출금
	부과액	장수액 (a)	장수액 (b)				
합 계							3,158,458
1)보통세	13,383,410	13,149,035	142,500	13,291,535			1,322,397
취득세	5,307,183	5,295,211	13,791	5,309,002	대상	10%	530,900
레저세	140,861	140,861	-	140,861	대상	10%	14,086
담배소비세	634,736	634,736	-	634,736	대상	10%	63,474
지방소비세	1,305,360	1,305,360	-	1,305,360			
5%분	562,111	562,111	-	562,111	대상	10%	56,211
6%분취득세	743,249	743,249	-	743,249	대상	10/11×10%	67,568
주민세	504,377	496,310	6,123	502,432			
균등분	56,859	49,519	5,645	55,164	대상	10%	5,516
지방소득세	4,788,491	4,639,566	50,297	4,689,862	대상	10%	468,986
자동차세	1,149,920	1,083,784	72,767	1,156,551	대상	10%	115,655
2)담배소비세	634,736	634,736	-	634,736	대상	45%	285,631
3)지방교육세	1,482,731	1,453,765	29,097	1,482,862	대상	100%	1,482,862
4)지방소비세6%분 지방교육세	743,249	743,249	-	743,249	대상	1/11	67,568

〈 2017회계연도 법정전출금 전출 현황 〉

(단위:백만원)

	징수총액 (지난년도 시세포함)	적용비율	전출대상액	기전출액	미교부액	2018 추경예정액
소 계	15,930,948	-	3,158,458	2,757,204	401,254	401,254
지방세	13,223,967	10%	1,322,397	1,110,455	211,941	211,941
담배소비세	1,156,551	45%	285,631	285,415	216	216
지방교육세	1,550,430	100%	1,550,430	1,361,334	189,097	189,097

-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서는 전출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다음연도 추경에 계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가 본 추경을 통해 법정전출금을 교육청으로 전출하여도 교육청은 본 전출금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는 집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전출의 시기가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3조(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하며, 반기별로는 징수된 세액을 정산하여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재정상황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합의를 거쳐 반기별 정산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 할 수 있다.

나.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 동반자’가 위기청소년에게 찾아가 상담, 긴급구조, 자활, 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추경에서 청소년동반자 활동비에 대한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 서울시의 부담분을 증액 편성 제출한 것임.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 산출내역 〉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민간위탁금	(×1,115,238) 2,230,476	(×1,064,618) 2,129,236	(×50,620) 101,240	청소년동반자 활동비 및 사업비 (×50,620)101,240

- 청소년동반자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1:1)으로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기관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민간위탁금 21억2천9백만원)와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민간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국비(5천만원)가 증액됨에 따라 시비를 함께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본 사업의 목표가 ‘청소년 동반자 서비스를 제공받는 청소년의 수’⁶⁾로 정해져 있고, 사업의 성과평가 지표도 청소년 수로 산정하고 있는바, 상담 및 지원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나, 청소년동반자의 지원을 받은 청소년의 수로만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타당한 성과평가기준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본 사업을 시행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지도·점검은 시설운영과 사업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지적사항은 사업운영에만 치중되어 있는바, 평생교육국에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역량 또는 지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사업의 성과 및 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도·점검 현황 〉

일시	점검기관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5	서울시	시설운영 사업전반	- 회계담당자 미임명 - 법인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심야시간 사용 2건) - 시설자체 인사위원회 규정 미준수(승진대상자가 인사위원으로 참여, 심사는 하지 않았으나 위원으로 참여)	- 회계담당자 임명 - 직원교육, 시정조치 - 시정조치
2016	여성가족부 서울시	시설운영 사업전반	청소년동반자 취약계층 고용비율 (10% 이상) 미준수	취약계층 고용 완료
2017	서울시	시설운영 사업전반	종사자 채용시 일부 인사 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 인사 미포함	직원 선발시 외부인사 포함하여 인사위원회 구성

6) 2018년 예산(안) 사업설명서 228p 발췌

- 2018년 서울시의 청소년동반자 사업 예산은 21억2천9백만원이나,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동반자 사업의 예산(2018.2.8. 승인)은 본 추가경정예산과 같은 금액인 22억3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 이는 서울시 예산편성 시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예산확정 시기 사이에 국비의 추가 증액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와 센터의 예산편성 규모를 일치시키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서울시의 예산에 맞춰 센터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원칙인바, 이러한 예산의 불일치가 행정편의적 발상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예산 비교 〉

(단위:천원)

서울시 기정예산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동반자 예산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2,129,236	2,230,476	2,230,476

〈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예산현황 〉

(단위:천원)

사업명	프로그램명	소요예산
	소계	2,230,476
청소년 동반자 사업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자치구 지원사업	2,202,997
	청소년동반자 교육	8,910
	청소년동반자 보고대회	2,549
	청소년동반자 컨설팅	3,600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홍보	3,000
	청소년동반자 정규직 전환	9,420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중 세부사업내용 발췌

다.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운영)

○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지원”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 복귀 및 학력취득, 직업체험, 자립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시센터 1개소, 자치구 센터24개소)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 청소년지원(꿈드림) 사업은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개요

- 운영법인 : (사)한국청소년육성회(2018.9.1. ~ 2020.6.30.)
- 주요사업
 - (상담사업) 개인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심리검사 등
 - (교육문화사업) 부모교육, 직원교육
 - (고유목적사업) 연구, 출판, 홍보사업, 마음지기, 외톨이청소년지원 등
 - (특별사업) 청소년동반자, CYS-Net운영,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등
- 운영인력 : 22명(센터장 1, 부장 1, 팀장 5, 직원 15)

구분	합계	일 반 직						비 고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정 원	22	1	1	1	4	7	8	사업수행 임시직 39명 별도 운영
현 원	22	1	1	1	4	7	8	

- 보조금 지원액 : 4,541,893천원(국비 1,558,934천원, 시비 2,982,959천원)

연번	보 조 사 업 명	2018회계연도 예산액 (단위 : 천원)
	총계	(×1,558,934) 4,541,893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356,996
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구축 지원 (시센터 CYS-Net 운영)	(×191,250) 382,500
2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구축 지원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87,471) 87,471
3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115,238) 2,230,476
4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운영)	(×164,975) 329,950
5	취약계층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154,500

-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지원”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1:1)이며, 국비 감액으로 시립 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금’은 1천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청소년지원센터의 ‘자치단체경상보조’는 3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 산출내역 〉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553,300) 3,106,600	(×1,533,500) 3,067,000	(×19,800) 39,600	
민간위탁금	(×164,975) 329,950	(×184,000) 368,000	(×△19,025) △38,050	서울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19,025)△38,050
자치단체경상보조	(×1,388,325) 2,776,650	(×1,349,500) 2,699,000	(×38,825) 77,650	자치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38,825)77,650

- 서울시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지원의 감액은 국비를 17개 시·도 청소년지원 센터 예산을 동일하게 교부하여 감액된 것이며, 자치구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수요의 증가를 반영한 국비 증액에 따른 시비를 증액 편성한 것임.
-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이후로,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관련 본내시(2017.9.14.) 후 변경(2017.12.15.)하는바, 국비변경 내역을 반영하고자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여짐.
- 본 사업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와 같이 서울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국비변경 사항을 민간위탁기관의 사업에는 반영하였는바, 행정편의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원칙에 맞게 서울시의 예산에 맞춰 센터의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라.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사업은 위기·가출 청소년에게 일시·단기·중장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은평청소년 쉼터 운영지원”(6천3백만원)과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2억5천3백만원)에 총 3억1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사업 산출내역 〉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2,263,949) 7,406,882	(×2,099,787) 7,089,709	(×164,162) 317,173	
민간위탁금	(×1,833,340) 6,831,333	(×1,669,178) 6,514,160	(×164,162) 317,173	은평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63,412)63,412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100,750)253,761
사회복지사업보조	(x144,940) 289,880	(x144,940) 289,88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285,669) 285,669	(x285,669) 285,669	-	

- 은평청소년쉼터(여, 중장기)는 여성가족부의 내부방침(일시·단기쉼터에만 국고보조금 지급)에 따라 2018년 예산은 국비보조 없이 편성하였으나, 회계연도 개시 이후(2018.6.22.) 국고보조금 교부를 통지해 옴에 따라 시비(기편성)의 증액 편성 없이 국비(6천3백만원) 증액분만을 반영하려는 것임.

※ 청소년쉼터 : ① 가출청소년에게(대상) ② 일시적으로(보호기간) ③ 생활지원, 보호(서비스), ④ 가정·사회로의 복귀(단기목표), ⑤ 학업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중장기목표) ⑥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시설 유형)을 의미함(「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제1호).

7)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의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쉼터입소대상 선정 시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만19세 미만 청소년이 우선된다.(입소대상 1순위 : 9~19세미만, 2순위 : 19세~24세)

- 청소년의 가출은 ‘비행으로 인한 가출’이 있는 반면, ‘살기 위한 탈출이라는 가출’도 존재하여, 중·장기쉼터의 운영은 필수적으로 보이는데, 중장기 쉼터의 지속적·안정적 운영과 중·장기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쉼터의 종류 〉

구 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보호 기간	24시간 ~ 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 이내 단기보호 *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가능(최장 9개월)	3년 이내 중장기보호 * 1회 1년에 한하여 연장가능(최장 4년)
이용 대상	가출·배회·노숙 청소년	가출 청소년	가출 청소년
핵심 기능	일시보호·거리상담지원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기 능	- 위기개입 상담 -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 가출청소년 조기구조 - 단기 청소년쉼터와 연계 - 기본적 의식주 제공 등 - 의료서비스 지원 및 연계	- 상담·치료 및 예방활동 - 의식주, 의료, 보호 제공 - 일시·중장기 쉼터와 연계 - 가정/사회 복귀대상 분류 * 저연령 청소년(13세 이하)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연계 권장	-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자립지원 등 제공 * 저연령 청소년(13세 이하)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연계 권장
위 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주요 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및 보호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비 고	숙소, 화장실의 경우 필히 남·녀용 분리 운영	반드시 남·녀용 쉼터를 분리 운영하여야 함	

-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공모에 서울시가 선정되어 국고보조금(1억원) 교부가 통보됨에 따라 국·시비 매칭(국3.5:시6.5)에 따라 시비(1억5천3백만원)를 반영하여 총2억5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중장기쉼터의 보호기간(3년 이내, 1년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최장 4년) 이후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마지막 단계의 보호시설이며, 청소년들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임.

※ **청소년자립지원관** :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

※ 중장기쉼터 퇴소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아직 개소 운영되지 않는 시도에서는 청소년자립지원관 개소시까지 한시적으로 쉼터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쉼터 보호기간 4년을 넘은 입소생으로 인하여 정원을 초과하게 된다 하더라도 정원 초과를 이유로 다른 청소년의 입소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여성가족부, 청소년시설사업 안내-운영지침)

○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설치(2~4호, 시비에 리모델링비 4천6백만원 포함)할 계획이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자립지원관 선정(2018.5.8.) 및 국고보조금 지급통지(2018.6.22.)된 후에 개소를 추진하고 있음.

〈 청소년자립지원관 사업추진 예산(안) 내역 〉

(단위:천원)

사업내용		사업비		
		계	국고	시비
총계		201,400	100,700	100,700
인건비	24,900천원*종사자6명	149,400	74,700	74,700
운영비	여비, 수용비, 제세공과금 등	10,000	5,000	5,000
사업비	월세지원·자립프로그램	42,000	21,000	21,000

※ 리모델링비 등은 시비로 별도편성

- 청소년자립지원관 설립으로 인하여 중장기쉼터의 보호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축소 조정될 예정에 따라 중장기쉼터 퇴소이후 자립지원관으로 입소하고 싶으나 정원부족으로 인해 입소하지 못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바, 청소년자립지원관이 규모가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의 수요파악을 통해 결정되지 않고, 예산의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청소년들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마.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사업은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방과 후 청소년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학교교육 보완 및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임.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대상

- (우선 순위)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3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 (기 타) 학교장 및 지역사회 추천서와 추천내용 증빙자료 기준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산출내역 〉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130,938) 3,257,972	(×1,052,478) 3,084,012	(×78,460) 173,960	-
민간위탁금	(×964,179) 3,091,213	(×870,642) 2,902,176	(×93,537) 189,037	시립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93,537)189,037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6,759) 166,759	(×181,836) 181,836	(×△15,077) △15,077	구립 청소년시설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15,077)△15,077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은 총 21개소(시립17, 구립4)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시립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1억8천9백만원(국비9천3백만원 포함)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립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국비 1천5백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동금액을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현황 〉

구분	시설명	인력 현황	수용정원 및 대상		
			총계	초등	중등
계	21개소	68	1,000	650	350
시립	강동청소년수련관	3	40	40	-
	강북청소년수련관	3	40	40	-
	화곡청소년수련관	4	60	40	20
	금천청소년수련관	4	60	-	60
	노원청소년수련관	3	40	-	40
		2	30	30	-
	창동청소년수련관	2	40	40	-
		2	40	-	40
		1	40	20	20
	동대문청소년수련관	3	40	40	-
	보라매청소년수련관	3	40	40	-
	마포청소년수련관	3	30	30	-
	성동청소년수련관	3	40	40	-
	성북청소년수련관	2	40	40	-
		1	30	-	30
		1	20	-	20
	문래청소년수련관	3	20	20	-
	은평청소년수련관	3	40	20	20
	서울청소년수련관	2	20	-	20
	망우청소년수련관	2	40	20	20
중랑청소년수련관	4	60	40	20	
수서청소년수련관	3	-	40	-	
구립	역삼청소년수련관	2	40	30	-
	유락종합사회복지관	3	40	20	20
	중구청소년수련관	3	40	20	20
	신월청소년문화센터	3	40	40	-

-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국·시비 매칭(국3:시7)사업으로, 시립시설의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장애형시설(문래·서울수련관 2개소)에 대한 증액(77만원), 신규시설(수서수련관) 추가(4천만원), 시범사업(주말형:창동수련관, 야간형:성동수련관)에 대한 국비(5천2백만원) 증액에 따라 시비를 매칭비율에 맞춰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 구립시설의 경우 강남구(역삼청소년수련관)의 수요조사 결과 정원(40명)보다 적은 인원(30여명)이 신청하여 이를 반영하여 국비가 감액되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1천5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바.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무상급식 범위 밖에 있는 저소득층의 고등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편성된 4억4천9백만원 전액을 감액하려는 것임.

〈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산출내역 〉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교육기관에대한보조	0	449,982	△449,982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449,982천원

- 본 사업은 다음년도의 고등학교 배치계획에 따라 저소득 고교생 수를 추산하여, 서울교육청이 전체 고교생의 16%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 초과분을 서울시가 교육청과 협의에 의해 편성하였으나, 2018년 추산결과 저소득층의 고교생 비율이 전체 고등학생의 16.22%였으나, 신청결과 총 고교생수의 14.93%만 신청하여,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서울시 편성분 예산 전액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2018년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분담비용 산출 내역 〉

고교생 수	예산추계 내역				신청결과	
	기관별	지원인원	분담비율	지원예산 (백만원)	인원	비율
263,528명	합계	42,771명	-	30,361	39,354명	14.93%
	교육청	42,164명	16%	29,911		
	서울시	607명	0.23%	450		

※ 교육청 예산편성 : 42,164명×172일×4,310원= 31,257백만원

※ 서울시 예산편성 : 607명×172일×4,310원= 450백만원

○ 본 사업은 학교급식법⁸⁾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식품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대규모 불용과 추경을 통한 감액편성을 반복하고 있어,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8)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학교급식법」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 최근 5년간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편성액	추경감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2018년	450	△450	-	-	-
2017년	2,860		561	2,299	80.4%
2016년	4,809	△2,253	1,964	592	23.2%
2015년	6,744		3,161	3,583	53.1%
2014년	7,282		4,384	2,898	39.8%

○ 본 예산의 예산편성 기준이 되는 저소득층의 고교생수의 추산을 전적으로 교육청에 의지하고 있고, 매년 대규모 불용이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증 또는 조정 현황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겠으며, 세밀한 예산추계에 따른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서울시와 교육청의 분담금액의 기준이 되는 ‘총 고교생 수의 16%’는 「학교급식법 시행령」⁹⁾에 따라 지원액 및 지원대상을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함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서울시와 교육청의 실무자의 협의로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사업전반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없이 전례답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9) 「학교급식법 시행령」제10조(급식비 지원기준 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액 및 지원대상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 본 사업은 지속적인 학령인구의 감소 및 신청비율이 낮아지고 있어, 현행 분담비율(총고교생 수의 16%를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향후 서울시는 저소득층 고교생의 급식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사업의 존속여부 등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본 사업의 지속 추진시 분담비율 또는 분담방식 조정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공공급식 영역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년(2017년, 50억2천5백만원) 대비 239.7%(120억4천8백만원) 증액한 170억7천4백만원을 2018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금번 추경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억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산출내역 〉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2,473,599	14,973,599	△2,500,000	
사무관리비	150,000	150,000	-	-
전산개발비	183,100	183,100	-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940,499	9,440,499	△2,500,000	공공급식센터 운영 및 차액지원 △2,50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5,200,000	5,200,000	-	-

- 본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감액은 지방선거로 인한 개소지연 및 차액신청 저조로 기존운영 중인 센터의 차액지원비 17억5천만원, 신규 개소 예정인 센터의 운영비 4억2천1백만원과 차액지원비 5억3천만원임.

- ※ 차액지원비 : 공공급식센터에서 식재료 구매비율이 70%이상인 경우 1식당 500원 지원.
- ※ 센터운영비 : 인건비, 시설운영비, 안전성관리비, 배송비, 클레임처리비, 카드수수료, 차액지원비가 포함되어 있음.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감액 산출내역 〉

(단위:백만원)

자치구	구분	2018 예산	집행액	집행 예정액	불용 예상액	불용사유
총 계		9,440	3,120	3,559	2,761	
소계(기존)		7,329	2,856	2,723	1,750	
기존 6개구	센터운영비	2,949	1,531	1,418	-	
	차액지원비	4,380	1,325	1,305	1,750	-차액지원 1,750백만원 불용예상(40%)
소계(신규)		2,111	264	836	1,011	
신규 2개구 (상반기)	소계	1,515	264	300	951	
	센터운영비	750	129	200	421	-지방선거(6.13) 등으로 개소 지연 -2개구(5.5개월)
	차액지원비	765	135	100	530	센터운영비 421백만원, 차액지원비 약 530백만원
신규 2개구 (하반기)	소계	596	-	536	60	
	센터운영비	326	-	326	-	-차액지원비 약 60백만원
	차액지원비	270	-	210	60	불용예산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감액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총 불용예상액이 27억 6천1백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감액편성은 25억원으로 제출하였음.
- 2018회계연도 예산 편성시 자치구의 공공급식센터를 금년 4월에 4개 자치구(서대문, 은평, 동작, 중랑)를 개소할 계획으로, 센터의 인건비, 안전성 관리비, 배송비 등 9개월분을 편성하였으나, 개소가 지연되어 3개월 미만으로 운영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2개구에 대해서만 5개월 가량의 예산만을 감액편성하고, 세부내역(인건비, 배송비, 클레임처리비, 카드수수료 등)에 대한 감액사항이 누락되었는바, 감액규모의 적정성 및 추가 감액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신규 자치구 공공급센터 개소예정 현황

9월 개소예정-서대문구, 10월 개소예정-동작구, 11월 개소예정-은평구, 중랑구는 연내개소 불투명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중 신규센터의 예산편성 내역 〉

(단위:백만원)

18년 참여 자치구(4개구)		3,330,469
사무인력인건비		289,508
센터장	4,200천 원*9월*4개구*0.5	75,600
발주	3,000천 원*9월*4개구*0.5	54,000
회계,관리	2,700천 원*2명*9월*4개구*0.5	97,200
4대보험	113,400천 원*9.36%*4개구*0.5	21,229
시설운영비		378,920
임차료,제세공과,관리비	5,000천 원*9월*4개구*0.5	90,000
포장박스(종이)	1,000개*1,000원*9월*4개구*0.5	18,000
출장여비	8인*40천원*9월*4개구*0.5	5,760
유류비및수리비	4대*450천 원*9월*4개구*0.5	32,400
차량소독	150천 원*9월*4개구*0.5	2,700
일반수용비	8인*100천 원*9월*4개구*0.5	14,400
야식대	8명*40천원*9월*4개구*0.5	5,760
공공급식센터운영위원회	1,500천 원*9회*4개구*0.5	27,000
안전성관리비		65,808
안전성검사비	20건*81,400원*9월*4개구	58,608
식재료샘플비	20건*10천 원*9월*4개구	7,200
배송비		523,866
공급팀장	3,000천 원*9월*4개구	108,000
공급팀원	3명*2,800천 원*9월*4개구	302,400
클레임처리비	5,000명*2,245원*70%*21일*9월*1%*4개구	59,403
카드수수료	5,000명*2,245원*70%*21일*9월*2.3%*0.9*4개구	122,964
차액지원비	5,000명*10,500원*9월*4개구	1,890,000

- 또한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센터건립비(기존 5개 자치구, 각 10억원) 지원 및 차량구입비(신규 4개 자치구, 각 1억원) 등 총 5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중랑구의 공공급식센터가 연내 개소가 불투명한 바, 차량구입비 감액의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중 신규센터의 예산편성 내역 〉

자치단체자본보조	○ 센터건립비지원	1,000,000천원*5개구	= 5,000,000천원
	○ 차량구입비	25,000천원*4대*4개구	= 400,000천원

- 본 사업은 2017년 예산편성시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예산이 책정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20억원이 감액¹⁰⁾된바 있으며, 2017년 결산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대규모 예산을 타 사업으로 변경사용(20억원, 총예산의 46.7%)한 후에도 과도한 예산을 불용(13억2천5백만원)시킨 사항이 지적되었던 사업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부실한 사전 조사에 따라 타당성이 결여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단기간의 성과주의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본 사업의 유통체계는 서울시 내의 친환경식재료 생산업체는 제외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식재료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의 친환경 식재료 생산업체를 육성할 방안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공공급식센터에서 과도한 비율(70%이상)의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역행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0)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의 예산심의 과정 〉

(단위:천원)

	2017년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조정액	조정후 예산액	조정액	조정후 예산액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	5,725,478	△2,070,000	3,655,478	△700,000	5,025,478

※ 본 사업은 정부의 식재료 시스템¹¹⁾과 별개로 식재료 공급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역상권과 상생을 고려하여 식자재 구매비용의 40% 이상 친환경 식재료 사용시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본 사업은 공공급식센터에서 70% 이상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은 국산 제철과일 소비확대를 위해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3억7백만원)가 배정됨에 따라 국·시비 매칭비율(국3:시7)에 따라 시비(7억1천6백만원)를 신규 편성하려는 것임.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산출내역 〉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민간경상사업보조	(×307,200) 1,024,000	-	(×307,200) 1,024,000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307,200)1,024,000

※ 세부 산출 기초

- 산출기초 : 25,662개(공급수)×제공횟수 21회×1,900원 = 1,023,913,800원(시비와 국비 7:3매칭)
- 공 급 수 : 지원대상 학생수(25,264명)+학교별 1개 보존식(398개)
- 제공횟수 : 추경확보 후 9월~12월까지 주1~2회 제공(학사일정, 과일수확량 등 감안)

-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천한 공급업체 중 한곳을 선정하여 9월부터 조각과일(약150g, 껍과일 등)을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에게 주 1~2회 제공하려는 것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¹²⁾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음.

11) 보건복지부, 공동구매 시스템,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지침”

12) 「식생활교육지원법」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식생활교육지원법」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본 사업이 학교로 지원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본 사업이 근거법령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학교로 직접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통계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아닌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천한 공급업체(가공업체)에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현재 학교에서는 과일간식이 아닌 후식의 형태로 학교급식 이후에 시행(초등학교 94.9%가 주 2회 이상 과일후식 시행)하고 있으며, 과일급식 확대 관련 설문조사결과¹³⁾에 따르면 과일제공은 후식형태(95%이상)로 원하고 있으며, 과일간식은 현재 학교의 여건(시설, 인력 등)으로 확대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평생교육국은 국비지원 여부에 따라 향후 추진계획을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본 사업의 추진에 대해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자. 집행실적 저조 사업에 대한 검토

-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2018년 7월 말 기준)을 보면, 현재 80% 이상 미집행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와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13) 과일급식 확대 설문조사(친환경급식과-1632(17.8.16) 관련 실태조사 결과)

- 특히,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사무관리비) 등 14개 사업은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당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평생교육국 80%이상 미집행사업 현황(2018년7월말 기준) 〉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2018년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7월말)
기본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700	700	3,500	83.3%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43,300	6,600	6,600	36,700	84.8%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	-	-	50,000	100%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0,000	-	-	180,000	100%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취약시설 기능보강 및 장비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26,000	-	-	126,000	100%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시설비	253,000	103,000	-	253,000	100%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감리비	720,000	-	-	720,000	100%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사무관리비	12,000	-	-	12,000	100%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설비	407,325	-	-	407,325	100%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사무관리비	5,000	500	500	4,500	90.0%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시설비	700,000	10,670	-	700,000	100%
꿈찾고(꿈을 찾아 Go! Go!) 중형진로직업탐색회 개최(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0	-	-	30,000	100%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사업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0	23,707	-	25,000	100%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사업(하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민간위탁금	20,000	-	-	20,000	100%
청소년 인권이야기(시민참여)	사무관리비	100,000	31,300	5,000	95,000	95.0%

세부사업명	통계목	2018년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7월말)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449,982	-	-	449,982	100%
친환경급식 안심식재료 자킴이단 구성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43,011	9,618	5,495	37,516	87.2%
식생활교육 학부모강사 양성	사무관리비	50,000	-	-	50,000	100%
친환경급식 유관기관 정책토론회	사무관리비	70,000	5,000	5,000	65,000	92.9%
친환경급식 열린마당 운영	행사운영비	100,000	-	-	100,000	100%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5,200,000	100,000	100,000	5,100,000	98.1%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정찬일